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6월 21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57호

### 상벌 규칙 일부 개정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상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제41조(소집 및 의결)

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「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